



제325회 정례회

2013. 12. 11.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3년 12월 02일

○ 회부일자 : 2013년 12월 03일

3.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631호, 2013.6.21.)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와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 규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3687호, 2012.3.30.)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규정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정비

4. 주요내용

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¹⁾”으로 변경(안 제2조부터 제5조)

나. 지역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당연직 직위 명²⁾ 변경(안 제5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2006.12.20., 전부개정)에 따름

2)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12. 12. 28., 일부개정)에 따름

이자율을 연 4%로 인하(종전 4%~6%)하여 변경하거나 신설
(안 제19조의2, 제37조, 제40조의2, 제62조)

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신설
(안 제34조제4항)

마.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
는 경우 연 4%의 반환가산금 규정 신설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
20조, 제24조, 제30조, 제36조, 제52조, 제55조, 제58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 이자율을 연 4%¹⁾로 인하(종전 4%~6%)하고, 과오납된 공
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4%의 반환가산금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폐
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정하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과
지역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
를 수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
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및 반환가산금 이자율 동일 적용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6.] [법률 제11724호, 2013.4.5.]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13.1.1.] [충청북도조례 제3524호, 2012.12.28.]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3.7.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658호, 2013.6.28.]

제21조(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 ① 지역교육청 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이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0.8.27, 2012.12.28>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8>

제23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2.12.28>

②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3과 2센터 지역교육청) 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평생체육건강과·특수방과후지원센터·학생학부모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2.28, 2010.8.27, 2012.12.28>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

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 및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7, 2012.12.28>

제24조의2(2과 2센터 지역교육청) ①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특수방과후지원센터·학생학부모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특수방과후지원센터장 및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의3(2과 1센터 지역교육청) ①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맞춤형교육지원센터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 및 맞춤형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3.23.][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6.21.][대통령령 제24631호, 2013.6.21.]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제14조(사용료)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 ④ (생략)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

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 ④ (생략)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부칙 <제24631호, 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대부료 산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제3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3.21>

1. (생략)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3.30.][대통령령 제23687호, 2012.3.30.]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